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0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상정된 안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문정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8)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7)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1)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1)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7)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4)
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소위원장 문정복**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대식 의원, 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2월 6일, 지난 법안심사소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 위촉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명확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밝히고 그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폐교·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그 요건에 재적학생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잔여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그 출연의 대상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름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바 워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금액은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대통령령에 두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성원 보호 중 편입학 지원은 민감한 대학입시 사안에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편입 대신 입학한 학생들을 최대한 졸업시키고 폐교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산장려금 없이 법안을 제정하고 이후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강경숙 의원안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은 학력 미인정 시설의 경우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는바 그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동 제정안은 쟁점이 많아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재산 출연은 공공성 훼손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행정안전부에서 중복 위원회 우려를 표함에 따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전담기관 소속으로 두려고 하는데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대체할 유사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교육부 소속으로 둘 필요가 있음.

해산장려금은 일단 규정을 두면 다시 철회하기가 어려운바 먼저 해산장려금 없이 운영한 뒤 이후 정책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소속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적 전문성이 있고 오히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할 경우 정치적 관계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사학진흥재단 소속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임.

해산장려금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산정을 통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자발적 폐교를 통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임.

동 제정안이 시혜성 법안이 되거나 그런 법안이 될 개연성이 있는 등 논란이 있으나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지난번 회의 때 법안소위원회 수정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제3조의2(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조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제4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8호 ‘제18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위원장님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원회 법적 지원과 소속 관련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소속이냐 아니면 교육부 소속이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문안에 정리돼 있는 대로 수정안에 이견 없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보호 강화도 지난번 수정해 주신 방안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산장려금 및 잔여재산 귀속 논란에 있어서도, 첫 번째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학진흥기금으로의 귀속만을 특례로 두고 있는 것에 이견 없습니다.

해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 귀속분의 15%와 설립자기본금의 최솟값으로 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감사 의무화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일단 해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돼 있던 걸 15% 기준으로 했는데 여전히 저는 여기에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도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최근에 교육부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한 2040년 정도까지 줄어드는 학령인구 수 대비해서 목표치로 잡고 있는 감소 수가 기껏해야 한 5%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

가지고 이 구조조정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나.

어떤 분야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잔인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긴 한데 이게 그냥 무늬만 기본계획,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런 현장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절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기본계획이라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어렵다.

교육부는 어쨌든 계속 교육부인 것 아닙니까,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고민정 위원** 결국 큰 흐름은 교육부가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 가셔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또 감사 의무화를 ‘할 수 있다’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찬성하기는 참 어렵고요. 다만 이 구조조정 계획안들 그리고 의무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폐교하겠다고 신청 오는 곳들이 생겨날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본계획 세우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언제든 다시금 이 해산장려금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모든 교육부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이 사안에 뛰어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마 보고드릴 때 저희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전체 인원은 약 50% 정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5%가 아니고. 아마 50%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민정 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가 그렇던데 그것은 나중에……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가 50%로……

○**고민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 대상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결정될 거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 문정복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김대식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이 굉장히 깊은 고민하고 또 현실과 가야 될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워낙 쟁점이 많아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수용된 거는

논의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 중요한 게 해산장려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해산을 마치 장려하는 것 같아서 이 단어를, 김대식 의원안에 ‘해산정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해산한다고 자신들의 자산의 일부를 갖고 나가는 거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수정안에 반영돼 있어요.

○조정훈 위원 그래서 ‘해산정리금’으로 하는 걸 제안드리고요.

이제 내용인데, 지금 수정안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잔여 해산정리금은 귀속분의 15% 등등등등 하는 건데 이게 귀속분의 15%라는 표현이 최대 상한 15%를 의미……

○소위원장 문정복 최대 상한 15%.

○조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수정안에는 그냥 15%로 보이거든요. 최대 15%인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원래 그렇게 정리된 거니까.

○조정훈 위원 실은 저희는 이걸 한 20%까지 올리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하여튼 최소한 15%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관련해서 교육부 추천 6명, 국회 추천 6명을 제안하신 건데 그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회 추천의 6명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건데 저희 교육위에 관련된 다른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교위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법률에 명시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추천 절차를 향후에 여야 동수로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제안은 그렇게……

○조정훈 위원 예, 저의 제안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관계없이 여야가 동수로 진행함으로써 정파성에 대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국회로 끝날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가 여야 동수로 추천을 함으로써 이 사립대학 구조조정이 또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법안 발의한 의원님 그 누구도 사립대학 구조조정이 정치화되는 걸 찬성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로써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입학 지원 기존 사례들 교육부에서 보고 받았고요. 지원 자체, 그러니까 편입학을 지원하는 그 안은 찬성을 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이 불공정성 논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도 지방대학들 구조조정하면서 편입학을 받아 주니까 근처에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학생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조정훈 위원 20대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논란, 대학 구조조정하는 게 권리냐라는 그 논란은 굉장히 민감하고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명시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편입학 지원 규칙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국회와 상의하셔서 국회가 학생들, 유권자들의 민감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꼭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다음에 편법 출연 방지 방안인데요.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위 법령에 반영하자고 요청하신 건데 저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을호 위원님의 의정활동의 일관성에 맞추어 볼 때도 옳으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 자산을 출연함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많은 목적지를 열어 두고 또 그와 동시에 악용이라고 그럴까요, 악용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는 게 맞지 절대로 사회복지법인에는 출연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쪽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법인화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취지를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반영하는 방법들이……

○**소위원장 문정복**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예.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가 정리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하고 싶은 얘기 이미 다 하셔서요 간단하게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법이 완전히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는 없고 일단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또 단점이 보이면 개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나 폐교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나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대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할 때 50%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구조적 개선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해 주시는 그런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할 때에는 재정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폐교하고 나서 그것이 안정화가 되면 지속적으로 폐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하게 폐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어서 시너지효과를 내서 폐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진행하고 계세요.

(문정복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의결 할까요?

(웃음소리)

○**강경숙 위원** 아니요. 저도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강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걸 뺏기 때문에요.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그러면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수정 제안 내용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됐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 다만 비리 사학 문제나 해산장려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위원장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 선출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제정안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13조부터 쭉 돼 있는데 대통령령안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우선은 대통령령안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골격이 나오면 대통령령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의원실과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의드리면서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김준혁 위원님이 손대신 것 여기 적혀 있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준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저는 이 법안이 아마 21대 때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내를 건널 때 저 내를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저 내가 소용돌이치고 힘드니까 건너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저 내를 꼭 건너기 위해서는 물 밑에 있는 돌이든 물 바깥에 있는 돌이든 조금씩 만져 가면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돌을 넣기도 하고 돌을 또 들어내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끝내 내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법안도 모든 분들에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고 또 아직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어제 교육부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사립대학 문제만이 아니라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도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법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수정의견 종합' 이거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소위에서 지적한 부분들 가운데 폐교 전에 감사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수정이 된 게 맞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백승아 위원 그리고 학생·교직원 보호 조치 의무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반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데, 114쪽의 17조 2항 보면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 학업중단위로금과 퇴직위

로금 지급,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해산정리금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헛갈리는 게 그러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출연하면 그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학생·교직원 보호 조치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모호해 보여 가지고.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잠시만요. 그 해석의 근거가 뭐니까?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률안의 해석이 있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7조에 보시면 제1항 '16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조가 폐교·해산의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고요. 그래서 18조에 보시면 '국가는 제16조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업중단에 대한 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서 임의조항인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임의조항은 맞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의무조항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이것은 말씀 주시면 그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위원님 제안은 이걸 강제조항으로 가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백승아 위원** 강제라기보다는 의무조항이요.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하여튼 선택조항이 아니라.

○**백승아 위원** 예,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다니던 학교가 사라졌는데 내 직장이 사라지는데 교직원 보호랑 학생위로금 정도 먼저 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해산장려금을 가져가야지. 이것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임의조항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임의조항이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지금은 임의조항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교육부 소속으로 둬야 된다.....

○**소위원장대리 조정훈** 잠시만요, 백승아 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지금 보면 17조 1항에서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2·3호로 되어 있고 1·2·3호로 되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원이 얼마나, 지금의 용어로 청산정리금으로 지급할 것인가는 말씀 주신 대로 사전적으로 미리 다 선지급해야 되는 학생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원들 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준혁 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승아 위원 되어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임의조항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한다’로 하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몇 글자 바꾸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라면서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선조치할 것인데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일까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당 조항을 정확하게 집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18조 2항 ‘폐교대학은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직원 보호랑 학생 보호를, 지금 꼭 이 조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다 의무조항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이 부분은 입법 심사하시면서 계속 보시듯이 재정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의조항으로 넣어 놓고 실제로 여러 가지의 정황을 고려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가 분명하니까……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산장려금을 먼저 지급하고 학생 보호, 교직원 보호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문정복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조항을 보시면, 18조 2항을 보면 폐교대학은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된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 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위로금을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백승아 위원 ‘해야 한다’로 바꿔도 문제 없겠다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지급한다’.

○백승아 위원 지급한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예,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잔여재산을 다 털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해도……

○백승아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예. ‘한다’, ‘지급한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위원님, ‘한다’로 해도 의무지출 규정이 됩니다.

○백승아 위원 이게 확실히 이렇게 되려면 의결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문정복 당연하지요. 확인 다 하셔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급한다’로 해서, 입법 의지가 분명하니까요. ‘지급한다’로 저희 이견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러면 ‘지급한다’로 수정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하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이견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질문드리고 싶은데……

○**소위원장 문정복** 잠깐만요. 다시, 몇 항?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제18조 2항과 4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소위원장 문정복** ‘지급한다’로 의무조항으로.

○**백승아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교육부 소속으로 둬야 된다는 것……

○**소위원장 문정복** 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입니다.

○**백승아 위원** 예.

이거랑 해산장려금은 나중에 해 보고 시작하자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됐는데, 사학진흥재단이 공공기관은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기는 한데 임명 과정이나 이런 게, 어쨌든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부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차이는 없다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장관이 위원회의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소속에 두든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소속에 두든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직접 위원회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위원회랑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교육부장관한테?

○**교육부차관 오석환**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처분해야 될 사항, 위원회가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재단을 전담기관으로 해도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처분의 단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부장관이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간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전담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처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단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해산정리금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유인책이 있어야 대

학들이 폐교를 하니까 필요하다 그 취지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랑 절차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돼 있는데 혹시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검토안 초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까 절차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법률에 우선적으로 공익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등등으로 하고 거기에서 사학진흥재단의 청산지원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재원들 중에서 그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는 매우 상세한 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령을 만들 때 저희가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황을 살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마련이 안 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냥 실무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대령의 조항으로는 아직 조문을 안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입니다.

보충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내부적인 논의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정책연구를 시행령을 이미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1차 정책연구.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백승아 위원** 그러면 초안이 있으신 거네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그렇지요. 있기는 있지만 오늘 논의되는 법안하고 약간 벼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작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을 해 주시면 이 벼전에 맞춰서 수정할 것은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그것 되시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이 진행 상황은 위원님들께 따로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게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도 다 이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복지부 소관인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여기에도 잔여재산 처리하는 규정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사회복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해산해 주는 건데—영유아 감소로 지금 어려우니까요—그런데 복지부도 신종 검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런 결정이 아마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꾸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아 가지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어린이집의 법인 청산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모가 매우 작아서 어린이집하고는, 직접 적용하는 복잡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립대학이랑 어린이집은 다르

지요. 재산의 규모나 법인 수, 교직원 규모,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정부가 정말 이런 것 다 고려해서 계획을 잘 해야 한다고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구조개선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너무 공감하고, 시급하다는 것도 제가 지방대학이 막 쓰러져 가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잖아요,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역대 정부가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국립대학 정원을 줄여 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수도권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전문대학들, 좀 열악한 대학들이 결과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의도는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불균형이 더 커진 거지요. 저는 제가 지방민이라서 이 부분이 되게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 열겠다고 했지만 사실 학령인구 감소는 손을 놓고 있잖아요. 손을 놓고 오로지 지금 정원 조정, 시장에 맡기는 정책들, 대체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퇴로를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교육이 사립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고등교육은. 그런데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수입 의존 비중이 51%가 넘는다,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고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힘든 이유가 학령인구 감소도 있지만 그동안 등록금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정부 책임도 크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러면 정을호 의원님도 발의하셨지만 앞으로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학들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 등록금 올려야 된다고 수긍하는 것 지켜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해산장려금 주고 대학들 문 닫으라고 하는 것 말고 뭐 하셨어요, 정부가? 저는 정부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강경숙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을호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정을호 위원님 토론하시고 강경숙 위원님께 마지막 토론 드리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 백승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번 법안과 비슷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령인구 감소로 지금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서지영 의원님 해서 한 4개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을 기본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를 해 주셔야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마지막으로 강경숙 위원님, 대미를 장식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대미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이번 소위 안건에 제가 발의했던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제 요청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소위원장님만 아니라 또 몇 명 위원님들이 통과 의지가 좀 확고하다 이런 생각

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련된 이 법률안은요 21대부터가 아니에요. 2010년도 18대부터 무려 15년간 논의의 이력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그만큼 쟁점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뭐가 잘못된 조항 때문에 사회에 어떤 여파가 있어서 명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나 아마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고민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평생교육시설 추가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렇게 또 말씀 주셔서 그런 것도 저는 삭제를 했기는 했었더랬어요. 하여튼 제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철회한 것인데요.

다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심의위원회를 사학진흥재단의 소관으로 한 것하고 무엇보다 해산정리금 그것을 지급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사회의 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역기능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회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저는 여전한데요.

제가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지만, 국립대학의 교수님 얘기를 한번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국공립 대학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폐교를 통해서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사학들이 여전히 있을 거고 대학 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가 되면 실제로 없어져야 될 지방의 좀비 대학들은 효율적으로 폐교가 되지 않은 채 고등교육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그냥 그렇게 여파에 따른 그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대학은 사실 그렇게 폐교가 될 수 있으나 서울·수도권 대학은 또 살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칫 서울 민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의견을 듣기로는 사교련의 교수님들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빨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첫해에 해산을 하게 되면 15%를 정리금을 주고, 두 번째 해에 정리하면 12%, 그다음에 세 번째 해에 정리하면 9%까지 해서 빨리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점인 것 같다는 의견도 주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여기 법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제가 알기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님께서 발의한 그 법안에서도 해산장려금 조항은 빠져 있었습니다. 21대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님이 발의한 법안에서도요.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그러하니 제가 철회를 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해야 될지는 저도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법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교수단체 연대체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전국교수연대회의에서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해산장려금이라는 독소조항의 배제, 폐교 대상 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 의무화—이것은 된 것 같아요—그리고 개별 대학의 폐교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 법안의 기본적 틀을 바꾸자는 요구였다’라는 의견을 제가 어제 성명서를

보고 따왔습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고요. 소위원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지금 백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구조심의위원회를 교육부 직속으로 둘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육부가 사학진흥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한다,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 업무를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탁한다’로.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러면 전담기관은 이제 정하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교육부로 두는 것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전담기관은 사학진흥재단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하고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둔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교육부 소속으로,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정법의 완결성이란 100% 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이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게 법률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나마 정리된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강경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혹시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넣을 수 있는지, 가령 첫 번째 하는 대학은 15% 이렇게 순차별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대통령령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강경숙 위원님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아마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시작돼서 어찌 됐든 소위를 넘기까지 30년 이상 걸린 건데 사회가 급변하고 아동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대학생 수가 50% 이상 감축된다는 이 시점에서 누구나 좋은 일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슬픈 일도 해야 되는 팀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 오늘 이 법에 대한 의결을 함으로써 우리 22대 교육위원회 소위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5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과 업무범위에 영유아 정책 관련 표현과 내용을 집어넣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안이 마련이 된 후에 논의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과 그다음에 출연, 보조 중 하나의 형태로 국가만 지원하도록 하는 형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명칭 변경하는 내용은 현재 명칭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 외에 교육도 앞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표현도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부칙 수정의견이 제시가 돼 있고요.

4페이지, 업무범위 확대의 내용 보시면 전체 내용은 왼쪽의 표에 정리가 돼 있고 주 내용은 기존 업무에 ‘영유아’, ‘교육’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고 업무위탁의 주체로 ‘교육감’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교育부장관이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보조금에 대한 근거 규정만 돼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출연금에 대한 근거도 추가로 마련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관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 명칭과 관련돼 있는 업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의 중앙정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유아교육이 이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관된 기관 중의 하나가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 소속의 유일한 유아 보육·교육과 관련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유아·유치원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중앙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보통합을 하면서 이관됨과 동시에 명칭도 포괄하도록 명칭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 교육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무영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의 관계에서는……

시·도교육청에는 지금 보면, 6쪽의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시·도교육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교육청마다 개별적인 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로서는 사실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연구에 관한 기능이 없어서 저희는 지금까지 유아 교육과 관련, 유치원 교육과 관련돼서는 총리실 산하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했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보통합을 통해서 이관되어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시기도 이미 유보통합의 중앙정부 통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영역을 시도의 유치원에 관한 지원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실행을 해 나가면서 지원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출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냐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요. 국고 또는 지방비로 하면 지방비가 시·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국고 또는 지방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의 의미라는 것이 어찌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지요? 또 인식이 어떠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개념의 느낌, 유치원은 교육 개념의 느낌, 실제로 또 지원도 다르고 그래서 국가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자꾸 늘봄학교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유보통합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라는 것에서 보육을, 이 명칭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해서. 우리 유아교육 개념이 보육의 개념에 머물지 않고 이 기관조차도 이제는 유보통합의 어떤 체계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명칭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적을…… 물론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잘 정리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도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잘 정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유보통합 추진이 정부 약속처럼 되지 않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일정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요,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일정대로 되고 있어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 지난번에, 작년 6월 달에 발표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연된 것은 그전의 계획보다는 지연됐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조직이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이해당사자들 갈등이 심해서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 법안은 너무 집단 간 갈등이 심하니까 심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유보통합, 필요한 쟁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갈등만 지금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 관계기관들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보육진흥원이 무슨 근거로 유아교육 포함해서 유치원 교사, 보육교직원 통합연수체계 이렇게 마련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동의가 안 되고.

교육부에서 이 법안 개정 의견 조회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의견 조회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소위자료 6쪽에 보면 일곱 줄 들어가 있는데 이것 몇 개 기관에서 의견 회신받으셨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이것은 전체 기관에 했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입니다.

한 150여 개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요.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서 계속 와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총 158건이예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교육부로부터 소위자료 수준에서만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추려서 보내셨어요, 다만 보내시고? 반대의견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반대의견도 같이……

○**백승아 위원** 지금 지자체랑 유치원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 그대로 다 보고 안 하셨잖아요.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장 남점순** 이미 다 그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소위자료에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신중 검토라고 이렇게…… 지금 현장의 극심한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많은, 서울·강원·충북·대전·전남·충남·세종·부산·전북·울산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 경기, 부산·대전·광주광역시 지자체 노조…… 뭐 어마어마해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소위자료에 땔랑 일곱 줄만 신중 검토로 된 것은 고의적

으로 교육부가 선택적으로 보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유보통합이 지금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관계기관들이 이렇게 극심하게 반대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청 산하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백승아 위원** 예, 이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강원, 전남, 울산은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과 밀접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보육진흥원 기능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도 지방자치가 대세인데 또 17개 시도 색깔대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소속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돼서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것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아 보육과 관련돼 있는 중앙 소속의 기관입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는 지금 말씀 주신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어찌 됐든 중앙정부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저희 교육부 산하기관인 보육진흥원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에 갈등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능이 중복돼요. 그러니까 보육진흥원·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교육·보육 업무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커리큘럼이나 연수 지원,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유보통합 진행되면 나중에 이것도 통합을 해야지, 이것은 현장에서 되게 혼란을 겪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교육부차관 오석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유보통합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형하고 유치원의 원형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상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전환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현재의 그 모습을 갖춘 채로 유보통합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 그걸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 소속, 즉 교육부 소속의 기관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도교육청의 현재의 지위를…… 시·도교육청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하면서 제가 우리 실무팀들하고 얘기한 게 저희가 아직은 반대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견 수렴이 됐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 드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에 대한 조회만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 먼저 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승아 위원**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말씀하셨듯이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것만 그런데,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유보통합 먼저 진행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이 법안 다시 논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도 실은 이 법안도 법안이지만 교육부에 좀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김영호 위원장님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2023년도 발표 당시의 유보통합 일정하고 진행 상황이 어긋나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이를테면 중앙 단위에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이제 발의는 하셨어요. 2024년 10월에 발의한 것이고 조직은 그런데, 재정에서도 이를테면 2023, 2024에 재정 이관 및 통합을 추진하고 25년도부터는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 상황을 보니까 25년도에 영유아특별회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세요. 지방재정이 합쳐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리고 법령을 또 보니까 23, 24년에 일괄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러셨고 25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5년도부터 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산에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세부적인 계획이 정말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요. 그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이 교부금을 통해서 추가 소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으면 초중등 교육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우려예요. 제가 실제로 학부모님하고 만나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자격에 관한 것도 0~5세 함께 하는 것 그리고 0~2세 또 3~5세 따로 하는 것, 여러 가지 자격에 관한 것

도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교육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에 지금…… 그게 지금 얼마나 시의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요소인 것인지,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에 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 관련된 것보다도,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교육부의 추진 상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3년에 말씀드렸던 시한하고 늦춰진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 통합을 2023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법률 개정이 2023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이 2024년 6월에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본격화됨으로써 그 이후의 주요 일정들이 뒤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2024년, 작년 6월 27일 날 저희가 시안을 발표해 드렸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단위의 이전이고요. 지방 단위의 이관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 재원 확보 방안과 그다음에 분담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의 영유아특별회계법은 중앙 단위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어린이집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의 새로운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의할 때 정부 재원과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실무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인 법안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기관 이관과 관련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관과 관련돼 있는 영역은 맨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사실 결국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은 법안 논의를 하시면서 재원 논의에 관한 갈래를 타 주시는 일들은 저희가 상의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시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5조에 해당하는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 자체를 못 주겠다, 업무만 이관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법률을 논의해 주시면서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통합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 과정 문제 그다음에 교육과정 문제, 시설 문제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지막 공청회 단계까지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여 회가 넘는 기간에 걸쳐서 공청회 다 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작년 12월 달에 안타깝게도 공청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공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내용들을 다 담은 것들이 통합 기준인데요. 통합 기준의 내용을 담아서 발의하고자 했던 원래의 계획이 작년 12월까지 기준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것을 반영한 기준법을 금년 내에 제정하겠다라는 그런 스케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중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짧게 할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질문이 있는데 장관님께 제가 업무보고 날, 화요일 날 유보통합에 국고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랬거든요, 장관님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복지부랑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재원 외에는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고 지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는 기존 재정 이관 반대 입장에서 변화는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자체는 일단은……

○**백승아 위원** 일단은 예산이 중요하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늘 협상하는 데 그렇듯이 5조 자체를 못 주겠다고 얘기하는 형국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그것을 법안에 담아 가지고 실행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고가 필요한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 이관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향 평준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관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을 상향 평준화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가 이전 단계에서 별도로 중앙 단위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영유아특별회계 할 때도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국고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저희는 대내외 입장이 분명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실 마지막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라고 할 때 등을 넣는 것에 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때는 법률과 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저는 밖에 가서 야단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저희의 재정 확보의 노력은 변함 없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보통합과 뭔가 관련된 것만 나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일단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제도적으로나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진척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보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안도 그러한 단계적 조치들의 일환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이라는 틀에서 얹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 유보통합을 하기로 다 결정을 했고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방향성 안에서 잘하냐 못하냐를 서로 따져 보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만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서 이게 출발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통합이라는 큰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가는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을 이제는 영유아 교육이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나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까지 일일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좀 거시적 관점에서 이 틀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시·도교육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국공립유치원 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하나하나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은 어떤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보통합 반대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소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보는지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이것은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낸다, 비판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 같고요.

○백승아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다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논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소위를 하다 보면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기자회견처럼 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문정복 소위는 원래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지만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법안에 좀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다른 여러 가지 여타 영역까지 확대하면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늘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그렇게……

○백승아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까지 드린 것은요……

○고민정 위원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백승아 위원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적만 하고 가시면 제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서지영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정말 힘드네요.

158개의 유치원이, 교육청이 반대했다고 해서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유보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명칭을 바꾸고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들을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짚은 거예요.

국고 지원 얘기 왜 했느냐? 사실 확인해야지요, 그래야 유보통합 제대로 진행되니까. 이 법안이 유보통합과 관련된 법안이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

타인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도 할 말 많은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엄청 많거든요. 예의를 좀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속기록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도 동일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지난번에도 서 위원님이 유사한 얘기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 차원의 굉장히 중차대한 법이 결정되고 의결되는 너무너무나 진짜 살 떨리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경청하고 듣고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고 그런 자리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명칭 관련된 법이기에 그 전에 순서가 앞뒤가 좀 어긋나기도 했다. 그 전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봐서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재정이나 조직이나 법령에 관한 것들을 살펴서 따져 보면서 이 법에 대한 시의적절성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유감을 계속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 소위 위원이 소위 열심히 하는 게 잘못입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알겠어요.

○백승아 위원 깊게 하라 이것 아니에요, 지금.

○소위원장 문정복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법안은 굉장히 간단한 법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유보통합을 좀 더 잘 나가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은 아니지만 그 단계에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법안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저는 교육부가 6페이지에 있는 그림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관리체계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현황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잘 것인지 그 그림을 오히려 좀 더 보여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지금 시도와 시·도교육청에 이렇게 분할되어 나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그림은 서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혼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도 좀 같이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조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조치를 전체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길에 있는 작은 돌덩이들을 치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저는 사실 이 법안을 보고받고는 ‘그래, 유보통합 해야 되니까 법체계를 좀 만질 필요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말씀 좀 들으면서 ‘별로 의지가 없으시구나’,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야당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야당입니다. 저희가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 얼마 전에 한 것 말고 언제 와 가지고 설명이라도 한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냥 작은 법안도 아니고 굉장히, 여기에 얹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교육 전체를 바꿔 버리는 아주 큰 사안인데 정부도 관심이 없는…… 뭐 지금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정부 안 굴러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활을 걸고 있으면 야당 위원들 붙잡고서라도 설명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법안심의 자리에서도, 저희 여당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 위원 설득하려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읍소도 하고 ‘이것 하나 빼 주시면 이것 하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우리는 계속 야당만 공격하련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여당이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구나’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김준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이름이 그 기관의 모든 성격과 내용, 업무 이런 것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김준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육진흥원이 기존에 보육만 하다가 유아교육까지 같이 담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그 역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김준혁 위원** 단위에서, 그러니까 중앙은 없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중앙 단위에서 없었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유아교육진

홍원을 통합할 거냐……

○**교육부차관 오석환** 전혀 아닙니다.

○**김준혁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백승아 위원님이나 강경숙 위원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다는 거지요. 지금 이 기능 통합에 대한 내용들, 지금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우려를 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뒤늦게 가야 된다. 왜? 이 내용은 어쨌든 나중에 정리는 해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유보통합이 아까 차관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치원과의 차별성 문제 또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

또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돈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가 실수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자자체에서 예산 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선후가 좀 더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문제가 차분하게 좀 더 알차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유아교육진흥원과 이 보육진흥원의 큰 틀에서의 결합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논의되고 나서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 자체가 무조건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아직, 여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지난 뒤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하실 거예요?

정성국 위원님 하시고 정을호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제가 먼저 신청했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정성국 위원** 법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른 것은 서로가 협의도 잘하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들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부분이 조금…… 그 말씀도 맞아요. 고민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은 여당이라는 위치와 야당이라는 위치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다르고, 분명히 또 저희는 정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의 태생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을 더 꼼꼼하게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이것을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법안 통과 의지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도 물론 법안심사소위는 한 분이 오랜 시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다 보면 자기 시간도 있고 또 약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안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에서는 조금 진행 속도가 운영이 잘 되고 아래 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 부분

에서는 좀 조절해 달라 이런 의미지 그게 발언을 많이 했다 해서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백승아 위원** 기자회견처럼 하지 말라면서요. 그게 그 말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비꼬면서 말을 해요, 동료 위원한테?

○**소위원장 문정복** 잠시만요.

○**정성국 위원** 그것은 두 분이서 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웃음소리)

○**백승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니까…… 죄송해요.

○**정성국 위원** 저는 항상 웃고 있는데.

○**백승아 위원** 그게 속뜻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변을 하시니까.

○**정성국 위원** 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성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백승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고요. 우선 저도 신중 검토라는 저의 의견을 밝히면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여러 법안에 대해서 아직 진행되고 있고 단위에서 지금 교육부에 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큰 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조금, 경중으로 따지면 다른 사안보다 빼대가 아닌 부분이 먼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우선 유보통합의 빼대를 먼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이 필요는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특히 예산 지원 근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보육 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보육진흥원만의 예산 지원 근거 명시는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대략 한 5 대 3 정도로 갈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및 7항, 강경숙 의원,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2월 6일 지난 소위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삭제(특별교부금 0.8% 원복)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시행 관련 대안 제시 필요. 교부금의 의무적 교부율 보정과 관련하여

세수결손 등으로 교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삭제와 관련하여 25년도의 경우 예산집행 중으로 사업 집행상 혼란 우려 고려 연도 중 사업 중단하는 특례 삭제 재검토 필요. 다만 26년도부터 삭제는 검토 가능. 교부금의 교부율 보정사유를 교원인건비 특정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책의 경직성을 과하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 검토 필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방만한 예산집행 문제점이 있고 보통교부금 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사업 집행 가능하므로 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삭제 필요’, ‘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삭제와 관련하여 25년도의 경우 예산집행 중임을 고려하여 특례 삭제 시행일을 26년 1월 1일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의 신설 취지에 맞게 3년간 운영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디지털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부율의 보정 사유 명확히 규정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재원을 늘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의 보정제도를 마련할 때는 그때 인건비성의 봉급교부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교부금하고 통합했었는데 그때 혹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만큼도 교부금이 안 늘어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보정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보시면 재원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당시에는 40.2%였는데 지금은 24.7%고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교부금의 규모가 당시에는 13.2조였는데 지금은 73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교부금의 인상하고 교부금의 인상을 바로 비교해 가지고 보정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표로 하나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사례로 되어 있는 것처럼—7쪽입니다—202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인건비는 4311억 원이 늘어났고 교부금은 결산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11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정제도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11조 8000억 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조 8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늘리는 것이 우리 교육재정을 늘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11.8조 원에 반영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국세의 20.79%라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것에 직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가운데에 있습니다마는—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내국세 교부금은 4.19%로,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4% 내외로 증가가 되어 왔고요. 교원인건비는 일반적인 봉급인건비를 고려할 때 2.3% 씩, 감소된 예가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실에도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실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아주 가속화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하시지요.

실제로 강경숙 의원님 안과 김문수 의원님 안이 각각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기는 한데 사실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도중에 김문수 의원님 법안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 주시면 이것을 병합해서, 통합해서 대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강경숙 의원님 안만 토론하게 되면 별도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그냥 자유롭게 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사실 앞에서 여야 간에 있어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히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이거야말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하게 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님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아는데 중도 보수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표 의장님이시기도 한데요, 김진표 의장님이 중심이되어서 주도했던 이 법안을 지금에 와서 폐지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어느 나라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개선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또 디지털 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서지영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지영 위원** 여기 3페이지의 검토의견이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서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검토의견 이렇게 냈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이런 취지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이런 취지로 검토의견, 당시에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안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입장이 바뀌었지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검토보고 때의 입장하고 소위자료 때의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뀐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 입장이 이와

같이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AIDT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 그것은 수석전문위원 개인 의견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할게요.

교부금에 대한 재정 통제의 어려움이 뭡니까? 이게 한시법안인데, 당시에 6년 동안 하려고 했던 법안을 3년으로 조정해 가지고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시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금에 대한 재정 통제의 어려움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아시겠지만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방만한 집행이라는 그런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 등등 해서 국회가 교부금에 대해서 재정 통제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AI 교과서 기능 없는 AI 연수, 그러니까 너무 부실하고 방만하게 돈을 썼다 말씀드렸었고, 보통교부금으로 이 돈을 넘겨도 AI 교과서 연수에 얼마든지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드렸었고 그리고 적용 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안 된다면 26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저는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교사 연수도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구색 맞추기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에 돈 쓰는 것 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AI 교과서 가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상 가격이 5만~6만 원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생각할 때 교육청 제시 금액이 3만 75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정확한지 모르겠는데—지금 5만~6만 원이면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전체가 지금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수도 지금 2년 동안 15조 덜 내려보내 주셨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빼서 교과서 어차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5만~6만 원이면 교과서 살 돈도 지금 모자랄 텐데 이렇게 연수에만 이 돈 특교 평평 쓰는 것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법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26년도에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도 지난번에 같은 의견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적용시한 26년도로 해서 이렇게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제가 잠깐 사실관계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잠깐만요.

지금 지난 소위 얘기로 차관님께서도 0.8%로 원복하는 것보다는 0.8% 그대로 두고 2025년도는 기반영됐으니 2026년도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그때 논의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의하셨고. 조정훈 간사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지난번 소위에서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의결을 못 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0.8% 그대로 놔두고 0.8%에 AIDT에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2026년부터 그것을 빼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대신 0.8%를 놔두게 되면 어떤 뭔가 다른 사업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임의대로 쓰는 돈이니 그것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고, 대략 5000억가량인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교육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은 독서·문화·체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는 0.8%에 대해서 독서·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시면……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승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고 궁금해하실 사항들이니까…… 교과서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상당수 타결에 이르렀는데 3만 7500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적으로 3만 7500원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실관계라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2025년에 유지하시고 2026년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도, 워낙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교부금의 재원 자체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하겠습니다.

다만 2026년도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 법안을 새로 만드시는 과정인데 그것의 제일 1번이 시·도교육청에서…… 독서, 체육 또는 문화와 관련되는 영역이 일견 굉장히 합리적인 용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이 재원들이 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혁신과 방과후학교와 관련돼 있는 재원이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법안을 만들 때 저희가 의견을 낼 때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2026년도 적용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가지고 별도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정성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래요, 그렇게.

강경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법은 지난번에, 여기 2쪽에도 보면 조정훈 간사님도 시기를 2026년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언급도 주셔서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감사드린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지난번에도 다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반복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새로운 의견이 조금 더 돌출되어서……

지금 이 법을 제안한 원래 취지는 뭐냐 하면, 입법에 대한 취지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디지털 특교를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법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에서 고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입법취지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이게 5000억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이것을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의견 조회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에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법을 낼 때 가장 뾰족한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이게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면서 교육자치가 줄어들 수 있다, 그게 훼손이 될 수 있다,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입법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안과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저희 정부 입장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유지해 주시고, 2026년도에 대해서 새로운 용도 변경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별도의 법률로 처리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할 때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 이 재원에 방과후학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재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재원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방과후학교가 가지는 효과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때, 2026년도의 용처에 관한 논의를 해 주시거나 법률 발의를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서지영 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다 못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뾰족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지영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아까 제가 질문만 하고 제 의견은 말씀 못 드렸지 않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에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영의 방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모든 사업들이 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게 집행이 됐다

는 것은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런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이러한 검토의견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AIDT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서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골고루 섞어 놓았는데 찬성하는 논거는 여러 연구소의 의견을 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논거는 뭘 들었느냐 하면 교육위 청원소위에 들어온 청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야당 의원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그다음에 신문 기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법조사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서 입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보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리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그러니까 AIDT라는 것을 삭제하고 김문수 의원이 낸 교부율의 보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통합해서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님 안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의원안이 들어간 거예요.

○**서지영 위원** 조정훈 의원안을 반영해서 사실상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예, 반영해서 한 거예요.

○**서지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 봐야……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부의 입장도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말씀 주신 걸로 하면 2025년은 유지하고……

○**소위원장 문정복** 시행일을 26년 1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2026년만, 바꾸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리고 2026년의 이 용도와 관련된 말씀은 별도로 법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문정복**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및 7항, 2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쪽입니다.

2월 6일 지난 소위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 부담을 완화할 근본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바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이 등록금 인상보다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학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함.

대학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기보다 대학의 투명성과 더불어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지원 방식을 학생들 및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상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협행 기준인 물가상승률의 1.5배와 개정안의 기준인 1.2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중간선인 1.35배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던 35만 명의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장학금도 감소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등록금 인상 말고 대학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가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특히 사립대학의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도 부족하고 등록금 인상을 상한을 추가로 낮추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 경쟁력 하락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제한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함.

1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대학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을 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학들이 국가 재정지원 사업 및 등록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교육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도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려는 입법부의 노력을 통해 고통을 공감하고 분담하려는 입법부의 노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1. 의료과정운영학교 인증 규정의 법률 상향 규정입니다.

24년 9월 26일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동 개정령안이 의대 교육 관련 국가 핵심 인프라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인증 규정을 법률에 상향 시킬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보장 여부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의평원은 의대 교육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므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법률 수준에서 평가인증 및 인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평가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더 부합하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2.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의 장과 협의할 것만을 현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가 구성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배정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원은 개정안에 따를 때도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배정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입니다.

배정심사위원회는 그간 비법정 위원회로 운영해 온 배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판단됨.

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목적·기능, 위원 구성·임기, 존속기한 등을 설치 근거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8쪽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한 학년으로 교육받는 문제는 의대 6년 과정에 더하여 전공의 수련과정 5년간 계속되는 문제이며 이들이 전문의로 배출되면 이제는 전 국민이 불량의사의 독자적인 진료 앞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25년도부터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들이 약 5%밖에 충원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핵심기반인 의료 기반의 부분적인 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사회적 재난의 한 유형입니다.

서울대 의대 등 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들은 증원을 받지 않은 관계로 예산상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량의사들이 양산되어 사회적 재난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증원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의 의대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은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의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면 교육부는 이용 및 전용 절차를 통해 필요한 예산 일부를 조달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은 이미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며 2024 및 2025학번들을 한꺼번에 한 학년으로 교육해야 함에 따라 교육을 제대로 할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불량의사를 양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회적 재난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인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대란 및 불량의사 양산 문제를 치유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재해복구라는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의 기존 예산을 아껴서 이용 및 전용 절차를 통해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모자라면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행·재정 지원은 재량규정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하며 행·재정 지원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획재정부입니다.

의대 증원이 교육여건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25년 예산에 의대 지원 예산을 기 반영하였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 별도의 법조항 신설 실익이 부족해 보이며 법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무규정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긴급한 필요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으로 별도의 법률에 예비비 사용 규정을 두는 것은 예비비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 사업을 위한 예비비 활용 규정을 개별법에 추가할 경우 타 사업으로의 파급 우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는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령상 변경 사유 중 제2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를 근거로 25학년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24년에 공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그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등’과 같은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시행계획 변경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하는 취지에는 의견이 없으나 법률에서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변경 사유를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과등’은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실제 대학 조직의 기본단위를 통칭하는바 상기 취지를 반영하여 학과 이외 학부 및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개편 시에도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5쪽, 부칙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학이 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3월부터 신학기가—종전 본과 3·4학년의 경우 1월 또는 2월에 학기가 시작되었으나 3월로 현재는 연기되고 있습니다—시작됨을 고려하여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휴학생 1만 8343명 대비 8.2%인 1495명만 복학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조치 없을 시 대부분 휴학을 계속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6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은 안정적인 학사 및 입시 운영을 위해 늦어도 3월 말까지 결정될 필요가 있으나 법안 공포 이후 배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대학별 배정안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며 26년 의대 정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배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제32조제2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25년 7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16쪽부터는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제11조의3(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과 관련하여 1항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17쪽입니다.

제32조(학생의 정원)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의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학칙으로’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항 ‘심의·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제32조의2(배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와 관련하여 1항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정심사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의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의사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각 절반씩 추천하는 의사로 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항 ‘배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배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호 ‘회의 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3호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5항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의과대학 교육여건 악화 방지를 위한 특례)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 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 하향과 관련돼서는 신중 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년간 1.5배 이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2025학년도에 첫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5%内外의 등록금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5배를 1.2배로 하향하는 것의 적정성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을 1.2배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1.2배 인상을 허용한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등록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논의해 주신 대로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그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를 통한 추가 재원 확보 그리고 다양한 수익 다각화를 통한 가능한 재원의 확보 그리고 정을호 의원님께서 계속 제안해 주시고 계시는 적립금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그러한 내부 지원, 특히 학생 지원 재원의 확보 방안들이 동시에 논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9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동 규정과 관련돼서는 원칙 조항들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인증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좀 더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항별로는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11조의3 1항의 경우에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 운영 개시 후에 사후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의료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일단 입학하고 난 다

음에 사후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들은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정 지위에 놓이게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다가 이 부분하고 직접 연계돼 있는 게 의료법 제11조, 제5조 및 7조와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입학·졸업한 자에게만 의사, 간호사 등의 국가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령 문항을 바꿔서 예외적으로 신설 대학이나 신규 교육과정의 경우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교육의 질 관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 불안정 지위에 놓여진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서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5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이것도 절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종전의 시행령에 있는 규정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와 같은 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볼 때 현행의 시행령상의 규정을 상향 입법을 하면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11조의3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의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당초 개정법률안과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2개를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정원에 관해서 현 대통령령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화하는 개정안 제32조제2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대해서만 배정위원회를 법정화하는 것은, 지금 의과대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수급 인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에만 한정해서 배정위원회를 입법적으로 법정화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대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및 수요, 국가 의료인력 양성 방향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통상 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정 직역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 위원 추천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두 단체에만 배정위에 참여할 의사 위원 전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대표성 저해 우려, 교육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전원법이 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 외의 위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대장을 정하고 구체적인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제32조제1항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한 정원 규정은 이견

없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32조제2항과 같이 배정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은 학생 정원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위원회의 규정과 같이 심의위원회로, 심의기구로 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심의에 사실상으로 구속되어 중앙부처의 장인 교육부장관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입법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2조의2제1항의 배정위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사항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20명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의대 배정 또는 타 지역의 배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적절한 수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20명을 규정할 경우에는 경직성이 너무 강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2조제2항은 의사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당초 드렸던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드립니다.

제32조의2 제3항부터 5항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예외적으로는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대립되는 것, 위원 간의 갈등이 예상이 되거나 위원들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등의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을 먼저 논의하고요, 의사일정 9항은 오늘 일독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 3월 초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선 의사일정 8항 고등교육법……

○김준혁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혁 위원 조금 전에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일독하고 다음에 하는 건 저는 동의하는데, 이 안의 표현 중에 ‘불량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 ‘미숙련의사’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지난번 토론 과정에서 사실 ICL 법 넘어가면서 이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ICL 법이 나중에 통과되면서, 이것이 먼저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건데 좀 순서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1.2배까지 올리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대학장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또는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크고 이런 상황을 좀 되짚어 봤을 때 약간 선언적인 의미고,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좀 교육부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그냥 하면 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여기 정성국 위원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법은 좀 넘겨 주십시오 하는……

정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왜 저 혼자 남아 있지? 저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정을호 위원님께 드렸던 말씀이었는데 1.2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확인해 보자. 그런데 의원께서 내셨지만 교육부에서는 1.2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 같은 거 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에 대한 논의가……

○**정성국 위원** 그래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1.2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볼 때도 선언적 의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산출 근거 확인을 하려고 해도 이게 명확하게 뭔가 규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께서 이 통과 의지가 굉장히 크신데 교육부가 어느 정도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를 지금 한번 여쭤보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러니까 교육부는……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는 안 된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1.5의, 지금 운영도 15년 동안 안 해 본 상황에서 동의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을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정성국 위원** 굉장히 난감한데, 제가 교육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니까.

○**소위원장 문정복** 권한이 있어요.

○**정성국 위원** 통과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곤란한 상황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정을호 위원님 눈빛 한번 보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문정복** 말씀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정을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법 통과로 줄어들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 현안질의 때 이야기했듯이 지금 124개 대학이 모두 다 인상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적립금이 가장 많은 홍익대도 인상을 결정해 가지고 4.99%인가 했더

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회와 정부가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님들께 ‘보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따뜻한 법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라는 구체적 근거를 산출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따뜻한 마음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정훈 위원님께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등록금 인상 자체 요청이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 협안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대에 정부 지원 예산이 23년 도에만 9조 70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10조 원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등록금 동결 기간인 2010년부터 23년까지 계산해 보면 94조 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준 돈이 올해까지 포함되면 100조 원 가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간접이 아니거든요. 함께 가자는 거지 간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관님의, 정부의 우려점도 있겠지만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법인전입금의 비율이 3%에 불과합니다. 그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은 공공이라는 부분들,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율성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까지 이번 내란 사태 빌려서, 정부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혼란한 틈을 타서 1등부터 10등의 적립금 학교가 모두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마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년부터는 못 올리겠다는 나름대로 짬짜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저는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립대학은 지금 아마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게나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재단전입금이라든가 적립금이라든가 등록금 이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끝까지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분들을, 감독권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정성국 위원님도 혼자 계시니까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정성국 위원님.

○정성국 위원 저 빌언 두 번 하는 거 인정해 주시지요? 한 번 더 할게요.

○소위원장 문정복 그럼요. 두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정성국 위원 감사합니다.

차관님, 대학 등록금의 의미가…… 제 아들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2명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용돈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도 많지만 말은 안 하는데 이 돈을 모으는…… 만약에 용돈 쓰기 위한 거라면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있으면 밥도 사고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어디 모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 보면 등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제도가 잘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그 숫자가 적

고 많고를 떠나서 소수라 하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책임교육, 대학이라 해서 무조건 자율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 할 때도 등록금도 다 국가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정을호 의원님의 이 법안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선언적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다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리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부분들을 나름 통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는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봐도 이게 선언적 의미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력, 정부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법안들처럼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법안도 있지만 이 법이 과연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결국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등록금 인상을 정책 수단으로 동결을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고요. 거기에 따라서 1.5배라는 그러한 실링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1.2로 내리면 명료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등록금 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1.5는 안 되지만 1.2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같이 논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정책과 병행이 되어야 하는 일인데 병행되는 현재의 과정에서 저희가 등록금 의존율을 놓치고 맞춤형 장학금을 올려 주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이후에 수익 다각화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것만을 별도로 1.2로 하향시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동의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역구 가 보면 등산로에 매일 가도 한 번도 안 온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못 보면요 의정활동 안한다고 그래요. 매일 뭐 하고 앉아 있냐고 이러거든요.

방금 정부가 많은 여러 정책들 했다 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을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런 선언적 의미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교육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세세하게 다 안 보잖아요, 사실은 헤드를 보고.

지금 제가 이거 반대를 한다 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면,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도……

문정복 간사님 저 눈빛을 한번 보세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가 중요한 거고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렇게 정부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끝까

지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말씀드렸고……

○**정성국 위원** 차관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국회도 국회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문정복** 차관님 됐고요, 그만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수정할게요. 아까 의사일정 6항하고 7항에서 제가 말을 3.8%를 그대로 동결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3%로 원복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하겠고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회의 권한으로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가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인 거여서……

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경숙 고민정 김민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